
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관련 ‘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(안)’

<정교초등학교>

□ 추진 근거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)[신설2022.12.27.]
-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40조의3(학생생활지도)[신설2023.6.27.]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[시행2023.9.1.]

□ 추진 배경
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운영 필요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없는 경우 신속한 마련 요구

□ 운영 기간

- 특례 운영 계획 수립 후부터 학칙 개정 전까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칙에 관한 특례) 제8조제4호, 제12조제6항 및 제9항,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,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☐ 세부 사항

○ [제12조제6항의 제1호, 2호, 3호,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] 학생 분리 장소·시간 및 학습지원

생활지도	요건		분리장소(시간)	절차 및 유의점	학습지원
12조 6항 지도(분리 장소·시간 및 학습지원)	1호 (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) 2호 (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)	수업 중 자리 이탈, 잡담,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	교실 내 다른 좌석 (수업 시간 내 일부)	주의를 준 후 실시	학생 본인 준비
			교실 내 지정된 위치 (수업 시간 내 일부)	주의를 준 후 실시 (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 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)	학생 본인 준비
			학생을 지도·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(수업 시간 내 일부)	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 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	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
	3호 (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)	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 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 는 경우	①교무실 ②그외 교감지정장소 (수업 종료 시 까지)	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에게 요청 후, 교무실무사 또는 수업없는 교사 또는 교감 이 인계하여 지정 장소로 이동	행동성찰문, 교과서 요약 등 과 제 부여
4호 (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)	1호~3호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수업 시간에 지각·결과를 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 도가 필요한 경우 교권침해 등의 교칙 위반 사유로 사안처리 및 지도 가 필요한 경우 흡연 및 기타 교칙 위반 사유로 사안처리 및 지도 가 필요한 경우	①교무실 ②그외 교감지정장소 (60분 이내)	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	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가능	

*지각: 정규수업 시작 시간(09:10)

*결과: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시작 10분 후 교실에 입실하거나 수업 종료 10분 전 퇴실 하는 것

○ [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]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

요건		분리기간	분리장소	분리방법
1	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(휴대전화 등 통신기기)	수업시간	교실 지정 장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회차 : 주의 실시 · 2회차 : 주의와 함께 분리 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· 3회차 :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· 수업 종료 후 : 즉시 되돌려줌
2	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(흥기, 레이저빔 기기 등)	3일	교무실 (생활안전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·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※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· 학부모에게 알리고,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찾아감. ※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
3	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(술, 담배 등)			
4	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(성냥,ライター, 도박에 관한 물건 등 학생생활규정 29조(소지금지물품))			